|  |  |  |
| --- | --- | --- |
| **제품품질 감독발췌검사 관리 임시방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18호    <제품품질 감독발췌검사 관리 임시방법>이 2019년 11월 8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019년 제14차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 샤오야칭(肖亞慶)  2019년 11월 21일  **제1장 총칙**   1. 제품품질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제품품질 감독발췌검사 업무를 규율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법률•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2. 시장감독관리부서가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독발췌검사는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법률•행정법규•부문규장에 제품품질 감독발췌검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1. 이 방법에서 감독발췌검사라함은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제품품질을 감독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법에 따라 조직하는 샘플 추출, 검사 및 처리 활동을 지칭한다. 2. 감독발췌검사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조직하는 국가 차원의 감독발췌검사와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조직하는 지방 차원의 감독발췌검사로 구분한다. 3.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의 감독발췌검사 업무를 총괄•지도•조율하고 국가 차원의 감독발췌검사를 조직•실시하며 전국의 감독발췌검사 정보를 취합•분석한다.   성(省)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지방 차원의 감독발췌검사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본급 감독발췌검사를 조직•실시하며 해당 행정구역 내의 감독발췌검사 정보를 취합•분석한다.  시(市)급•현(縣)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본급 감독발췌검사를 조직•실시하고 해당 행정구역 내의 감독발췌검사 정보를 취합•분석하며 상급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본 행정구역 내에서 전개하는 샘플 추출 업무에 협조하고 감독발췌검사 결과 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1. 감독발췌검사에 필요한 샘플의 추출•구매•운송•검사•처리 및 확인검사 등 업무비용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동급 정부의 재정예산에 편입시킨다. 2. 생산자•판매자는 감독발췌검사에 협조하고 감독발췌검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여하한 방식으로도 감독발췌검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3. 동일 시장감독관리부서는 6개월 내에 동일 생산자가 동일 표준에 따라 생산한 동일 상표, 동일 규격의 제품(이하 ‘동일 제품’으로 약칭)을 대상으로 2회 이상의 감독발췌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샘플 추출 시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가 지난 6개월 내에 상급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동일 제품을 대상으로 감독발췌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하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발췌검사를 중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감독발췌검사에서 발견된 불합격 제품에 대한 추척발췌검사와 돌발사건 대응을 위한 감독발췌검사는 본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1. 감독발췌검사는 샘플 추출 및 검사 분리제를 시행한다. 현장검사를 제외하고 샘플추출요원은 그가 추출한 샘플의 검사 업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법률•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발췌검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여하한 조직 또는 개인도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의 동의 없이 감독발췌검사 결과를 무단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감독발췌검사의 조직**   1.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가 차원의 감독발췌검사 연간계획을 제정하고 성(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본급 감독발췌검사 연간계획을 제정하고 직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하여 비안(備案)한다.   1.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본급 감독발췌검사 연간계획에 근거하여 감독발췌검사방안 및 감독발췌검사 실시세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감독발췌검사방안은 발췌검사를 실시하는 제품의 범위, 업무분장, 진도 요구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감독발췌검사 실시세칙은 샘플 추출방법, 검사항목, 검사벙법, 판정규칙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감독발췌검사 실시세칙은 샘플 추출 전에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정부조달 등 관련 요구에 따라 감독발췌검사의 샘플 추출•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샘플추출기구•검사기구를 확정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여 권리•의무와 위약책임 등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법률•행정법규에 샘플추출기구•검사기구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법정(法定) 자격을 구비한 기구에 해당 용역을 위탁하여야 한다.   1. 샘플추출기구•검사기구는 수탁받은 범위 내에서 샘플 추출•검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샘플 추출•검사 업무와 그 결과의 객관성•공정성•진실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샘플추출기구•검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샘플 추출을 실시하기 전에 여하한 방식으로 감독발췌검사방안의 관련 내용을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에게 고지하는 행위 2. 검사 용역의 전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의 동의 없이 검사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3. 허위 검사보고서를 발행하는 행위 4. 감독발췌검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에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와 감독발췌검사 대상 제품과 동일한 유형의 제품에 관한 유상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가 위탁하는 동일 제품에 대한 검사 용역을 수탁하는 행위 5. 감독발췌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제품 추천, 우열 평가를 전개하거나 감독발췌검사 제품 합격증서•간판 등을 발행하는 행위 6. 그가 담당하는 감독발췌검사 업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불법이익 또는 부정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 7. 규정에 반하여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로부터 샘플 추출•검사 등 감독발췌검사와 관련된 비용을 수취하는 행위.   **제3장 샘플 추출**  **제1절 현장에서의 샘플 추출**   1.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스스로 샘플을 추출하거나 샘플추출기구에 위탁하여 샘플을 추출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샘플추출요원을 무작위로 선정•파견하여야 한다.   샘플추출요원은 관련 법률•행정법규•부문규장 및 표준 등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1. 샘플추출요원은 최소 2명이어야 하며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하는 시(市)급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발행한 감독발췌검사통보서, 샘플추출요원 신분증명을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샘플추출기구가 샘플 추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발행한 수권위탁서의 사본을 추가로 제시하여야 한다.   샘플추출요원은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에게 발췌검사 대상 제품의 범위와 샘플 추출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샘플은 샘플추출요원이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의 판매 대기 제품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야 하며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가 스스로 샘플을 추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샘플추출요원은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의 영업집조•사업허가 미비 등 검사 없이도 위법 판정이 가능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 샘플 추출을 중단하고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위법 혐의에 연루된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 소재지의 현(縣)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샘플추출요원은 샘플을 추출하여서는 아니된다. 2. 판매 대기 제품의 수량이 감독발췌검사 실시세칙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샘플을 추출하고자 하는 제품이 판매용 제품이 아니거나 수출 전문용 제품으로 수출계약에 제품 품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4. 제품 또는 그 포장에 ‘시험 제작’, ‘처리’, ‘샘플’ 등 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 5. 샘플추출요원은 샘플을 추출함에 있어 감독발췌검사 실시세칙에 정해진 샘플 추출방법에 따라야 한다.   샘플추출요원은 정해진 샘플추출문서를 사용하여 샘플 추출 정보를 기록하여야 하며샘플 추출 장소, 보관 환경, 샘플을 추출한 제품의 표지, 재고 수량, 샘플 추출 과정 등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증거를 남겨야 한다.  샘플추출문서에는 샘플추출요원과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샘플추출요원은 샘플추출문서에 해당 상황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자를 간증인으로 요청할 수도 있다.  샘플추출문서의 정정 또는 보충이 필요한 경우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가 정정 또는 보충이 이뤄진 위치에 확인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의 생산 품목 변경, 휴업 등 원인으로 샘플 추출이 불가능한 경우 샘플추출요원은 사실대로 기록한 후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가 샘플에 대해 현저히 불합리한 판매가격을 제시하는 등 방식으로 샘플 추출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샘플추출요원은 사실대로 기록하고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 소재지의 현(縣)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샘플은 검사용 샘플과 예비용 샘플로 구분한다.   검사가 파괴적 실험 방식으로 이뤄지지 아니하며 샘플의 품질에 실질적 영향이 미쳐지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샘플추출요원은 검사용 샘플을 구입하여야 한다. 검사용 샘플의 구입가격은 생산•판매 제품의 표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표시가격이 없을 경우 동일 유형 제품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예비용 샘플은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법률•행정법규•부문규장에 샘플 획득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1. 샘플추출요원은 효율적인 개봉방지 조치를 취하여 검사용 샘플 및 예비용 샘플을 각각 별도로 봉인하여야 하며 샘플추출요원과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가 확인 서명을 하여야 한다. 2. 샘플은 샘플추출요원이 검사기구에 직접 전달하거나 택배로 검사기구에 전달하여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손되기 쉬운 물품, 위험화학품 등 운송•보관에 대해 특수 요구가 있는 샘플은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샘플의 운송•보관 과정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검사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샘플을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가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경우 봉인 조치를 취하고 봉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는 봉인된 샘플을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은닉, 도피, 매각,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온라인 구매 방식의 샘플 추출**   1.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판매하는 해당 행정구역 내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과 해당 행정구역 내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샘플을 추출함에 있어 소비자 명의로 샘플을 구입할 수 있다. 2.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온라인 구매 방식으로 샘플을 추출함에 있어 샘플추출요원 및 대금지급계좌, 등록계정, 배송지 주소, 연락방식 등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샘플추출요원은 화면 캡쳐, 사진 또는 영상 촬영 등 방식으로 샘플 추출 대상 판매자의 정보, 샘플의 상품상세페이지에 전시된 정보, 주문서 정보, 결제기록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샘플추출요원이 구입한 샘플은 검사용 샘플과 예비용 샘플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샘플추출요원은 샘플 도착 후 사진 또는 영상으로 개봉 과정을 기록하여야 하며 배송 포장, 샘플 포장, 샘플 표지, 샘플 배송 상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사용 샘플과 예비용 샘플은 각각 별도로 봉인한 후 직접 검사기구에 전달하거나 택배로 검사기구에 전달하여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샘플추출요원은 샘플의 상태에 근거하여 샘플추출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샘플추출문서는 샘플추출요원이 서명하고 샘플추출부서의 공인을 날인한 후 감독발췌검사통보서와 같이 샘플 추출 대상 판매자에게 발송한다. 샘플추출기구가 샘플 구입을 대행하는 경우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발행한 수권위탁서 사본도 같이 발송하여야 한다.  **제4장 검사**   1. 검사요원은 샘플을 전달받은 후 사진 또는 영상으로 샘플의 외관, 상태, 봉인표지 파손 여부와 검사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샘플과 샘플추출문서상 기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샘플 추출이 규범적으로 이뤄지지 아니한 샘플에 대해 검사요원은 접수를 거부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온라인 구매 방식으로 샘플 추출이 이뤄진 검사용 샘플과 예비용 샘플은 각각 별도로표지를 부착한 후 관련 요구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1. 샘플을 추출한 제품이 생산허가, 강제성제품인증 등 관리를 시행하는 제품인 경우 검사요원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샘플의 생산자가 해당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검사요원은 샘플 생산자의 영업집조•사업허가 미비 등 검사 없이도 위법 판정이 가능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 검사를 중단하고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위법 혐의에 연루된 샘플 생산자 소재지의 현(縣)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검사요원은 검사를 진행함에 있어 감독발췌검사 실시세칙에 정해진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규칙 등에 따라야 한다.   검사 과정에서 샘플의 효력 상실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검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검사요원은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검사기구가 발행하는 검사보고서는 그 내용이 진실적이고 온전하며 데이터가 정확하고 결론이 명확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서명, 날인이 이뤄져야 한다.   검사기구와 검사요원은 그가 발행하는 검사보고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1. 검사기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사에서 합격 결론이 내려진 경우 무상으로 제공받은 샘플은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이의 신청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전항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기타 샘플은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이의 처리 신청기간이 만료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이의 처리**   1.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지체없이 검사 결론을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그가 법에 의거하여 갖는 권리도 고지하여야 한다.   판매자의 사업 현장에서 샘플을 추출한 경우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샘플에 표시된 생산자에게도 동시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온라인 구매 방식으로 샘플을 추출한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와 샘플에 표시된 생산자에게도 동시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의가 있는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는 검사 결론을 서면으로 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이의 처리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가 샘플 추출 과정, 샘플의 진실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 처리 신청을 받은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이의 처리를 조직하여야 하며 처리 결론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가 검사 결론에 대해 이의가 있어 서면으로 재검사를 신청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 경우 이의 처리 신청을 받은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연구를 조직하여야 한다. 재검사가 필요하고 재검사 조건이 구비된 경우 재검사를 조직하여야 한다.  검사가 파괴적 실험 방식으로 이뤄지지 아니하며 샘플의 품질에 실질적 영향이 미쳐지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검사를 조직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에게 예비용 샘플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은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재검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재검사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재검사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검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신청인이 재검사 수속을 이행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해당 자격을 구비한 검사기구를 확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재검사 수행기구와 1차검사 수행기구가 동일한 기구여서는 아니된다. 단,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성(省)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의 행정구역 내에 또는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시(市)급•현(縣)급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소재한 성(省)의 관할구역 내에 해당 자격을 구비한 검사기구가 오로지 한개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가 예비용 샘플을 은닉, 도피, 매각, 훼손하는 경우 재검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1차검사의 결론을 최종 결론으로 한다. 2. 재검사기구는 사진 또는 영상으로 예비용 샘플의 외관, 상태, 봉인 파손 여부와 검사 결론에 영향에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예비용 샘플과 샘플추출문서상 기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재검사기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감독발췌검사 실시세칙에 정해진 검사방법, 판정규칙 등에 따라 이의 관련 검사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진행하고 재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재검사 결론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재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서면으로 재검사 신청인에게 고지한다. 재검사 결론은 최종 결론이다. 4. 재검사 비용은 신청인이 재검사기구에 선납한다. 재검사 결론이 1차검사의 결론과 일치한 경우 재검사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재검사 결론이 1차검사의 결론과 불일치한 경우 재검사 비용은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부담한다.   **제6장 결과 처리**   1.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감독발췌검사 결과를 취합 및 분석하고 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감독발췌검사 상황을 지방 인민정부, 직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와 동급 유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 차원의 감독발췌검사를 조직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불합격 제품이 본 행정구역 이외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것임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생산자 소재지의 동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에서 불합격 결론이 내려진 제품에 대해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는 동일 제품의 생산•판매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2. 결과 처리를 담당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불합격 제품의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에게 60일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3. 결과 처리를 담당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명령일로부터 75일 내에 감독발췌검사 실시세칙에 따라 확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가 확인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결과 처리를 담당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상급 기관을 거쳐 성(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성(省)급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사회에 공고한다.   1. 결과 처리를 담당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공고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 90일이 만료되기 전에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에 대한 확인검사를 조직하여야 한다. 확인검사를 여전히 통과하지 못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 및 기한부 정돈을 명한다. 정돈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확인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영업집조를 취소한다. 2. 확인검사에 필요한 샘플은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확인검사에 필요한 샘플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는 결과 처리를 담당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로부터 확인검사 합격 판정을 받을 때까지 동일 제품의 생산•판매를 재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감독발췌검사에서 제품의 지역적•업계적인 품질 문제가 발견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기타 유관부서•업계조직과 회동하여 품질분석회의를 소집하고 관련 제품 생산자•판매자가 품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7장 법률책임**   1. 샘플 추출 대상 생산자•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현(縣)급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률•행정법규에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범죄 구성 혐의로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 추궁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으로 이송한다. 2. 샘플을 추출한 제품에 심각한 품질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3. 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감독발췌검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결과 처리를 담당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의 확인검사 합격 판정 없이 동일 제품의 생산•판매를 재개하는 경우 5. 샘플을 은닉, 도피, 매각, 훼손하는 경우 6. 샘플추출기구•검사기구와 그 직원이 이 방법 제9조,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현(縣)급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률•행정법규에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범죄 구성 혐의로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 추궁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으로 이송한다. 7. 시장감독관리부서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거나 사리 모도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하는 경우 직접적인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법에 의거하여 처분을 내린다.   **제8장 부칙**   1.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샘플추출문서 등 관련 자료•증거를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최소 2년이다. 2. 이 방법에서 ‘일’이라 함은 달력일을 지칭한다.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3. 이 방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0년 12월 29일 원(原)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33호로 공포된 <제품품질 감독발췌검사 관리방법>, 2014년 2월 14일 원(原)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61호로 공포된 <유통분야 상품품질 발췌검사방법>, 2016년 3월 17일 원(原)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85로 공포된 <유통분야 상품품질 감독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  | **产品质量监督抽查管理暂行办法**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第18号    《产品质量监督抽查管理暂行办法》已于2019年11月8日经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2019年第14次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20年1月1日起施行。                            局长：肖亚庆   2019年11月21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加强产品质量监督管理，规范产品质量监督抽查工作，保护消费者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和《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等法律、行政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市场监督管理部门对本行政区域内生产、销售的产品实施监督抽查，适用本办法。  法律、行政法规、部门规章对产品质量监督抽查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三条** 本办法所称监督抽查，是指市场监督管理部门为监督产品质量，依法组织对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生产、销售的产品进行抽样、检验，并进行处理的活动。  **第四条** 监督抽查分为由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组织的国家监督抽查和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组织的地方监督抽查。  **第五条**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负责统筹管理、指导协调全国监督抽查工作，组织实施国家监督抽查，汇总、分析全国监督抽查信息。  省级市场监督管理部门负责统一管理本行政区域内地方监督抽查工作，组织实施本级监督抽查，汇总、分析本行政区域监督抽查信息。  市级、县级市场监督管理部门负责组织实施本级监督抽查，汇总、分析本行政区域监督抽查信息，配合上级市场监督管理部门在本行政区域内开展抽样工作，承担监督抽查结果处理工作。  **第六条** 监督抽查所需样品的抽取、购买、运输、检验、处置以及复查等工作费用，按照国家有关规定列入同级政府财政预算。  **第七条** 生产者、销售者应当配合监督抽查，如实提供监督抽查所需材料和信息，不得以任何方式阻碍、拒绝监督抽查。  **第八条** 同一市场监督管理部门不得在六个月内对同一生产者按照同一标准生产的同一商标、同一规格型号的产品（以下简称同一产品）进行两次以上监督抽查。  被抽样生产者、销售者在抽样时能够证明同一产品在六个月内经上级市场监督管理部门监督抽查的，下级市场监督管理部门不得重复抽查。  对监督抽查发现的不合格产品的跟踪抽查和为应对突发事件开展的监督抽查，不适用前两款规定。  **第九条** 监督抽查实行抽检分离制度。除现场检验外，抽样人员不得承担其抽样产品的检验工作。  **第十条** 组织监督抽查的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按照法律、行政法规有关规定公开监督抽查结果。  未经组织监督抽查的市场监督管理部门同意，任何单位和个人不得擅自公开监督抽查结果。    **第二章 监督抽查的组织**  **第十一条**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负责制定国家监督抽查年度计划，并通报省级市场监督管理部门。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负责制定本级监督抽查年度计划，并报送上一级市场监督管理部门备案。  **第十二条** 组织监督抽查的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根据本级监督抽查年度计划，制定监督抽查方案和监督抽查实施细则。  监督抽查方案应当包括抽查产品范围、工作分工、进度要求等内容。监督抽查实施细则应当包括抽样方法、检验项目、检验方法、判定规则等内容。  监督抽查实施细则应当在抽样前向社会公开。  **第十三条** 组织监督抽查的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按照政府采购等有关要求，确定承担监督抽查抽样、检验工作的抽样机构、检验机构，并签订委托协议，明确权利、义务、违约责任等内容。  法律、行政法规对抽样机构、检验机构的资质有规定的，应当委托具备法定资质的机构。  **第十四条** 抽样机构、检验机构应当在委托范围内开展抽样、检验工作，保证抽样、检验工作及其结果的客观、公正、真实。  抽样机构、检验机构不得有下列行为：  （一）在实施抽样前以任何方式将监督抽查方案有关内容告知被抽样生产者、销售者；  （二）转包检验任务或者未经组织监督抽查的市场监督管理部门同意分包检验任务；  （三）出具虚假检验报告；  （四）在承担监督抽查相关工作期间，与被抽样生产者、销售者签订监督抽查同类产品的有偿服务协议或者接受被抽样生产者、销售者对同一产品的委托检验；  （五）利用监督抽查结果开展产品推荐、评比，出具监督抽查产品合格证书、牌匾等；  （六）利用承担监督抽查相关工作的便利，牟取非法或者不当利益；  （七）违反规定向被抽样生产者、销售者收取抽样、检验等与监督抽查有关的费用。    **第三章 抽 样**  **第一节 现场抽样**  **第十五条** 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自行抽样或者委托抽样机构抽样，并按照有关规定随机抽取被抽样生产者、销售者，随机选派抽样人员。  抽样人员应当熟悉相关法律、行政法规、部门规章以及标准等规定。  **第十六条** 抽样人员不得少于两人，并向被抽样生产者、销售者出示组织监督抽查的市场监督管理部门出具的监督抽查通知书、抽样人员身份证明。抽样机构执行抽样任务的，还应当出示组织监督抽查的市场监督管理部门出具的授权委托书复印件。  抽样人员应当告知被抽样生产者、销售者抽查产品范围、抽样方法等。  **第十七条** 样品应当由抽样人员在被抽样生产者、销售者的待销产品中随机抽取，不得由被抽样生产者、销售者自行抽样。  抽样人员发现被抽样生产者、销售者涉嫌存在无证无照等无需检验即可判定违法的情形的，应当终止抽样，立即报告组织监督抽查的市场监督管理部门，并同时报告涉嫌违法的被抽样生产者、销售者所在地县级市场监督管理部门。  **第十八条** 有下列情形之一的，抽样人员不得抽样：  （一）待销产品数量不符合监督抽查实施细则要求的；  （二）有充分证据表明拟抽样产品不用于销售，或者只用于出口并且出口合同对产品质量另有约定的；  （三）产品或者其包装上标注“试制”、“处理”、“样品”等字样的。  **第十九条** 抽样人员应当按照监督抽查实施细则所规定的抽样方法进行抽样。  抽样人员应当使用规定的抽样文书记录抽样信息，并对抽样场所、贮存环境、被抽样产品的标识、库存数量、抽样过程等通过拍照或者录像的方式留存证据。  抽样文书应当经抽样人员和被抽样生产者、销售者签字。被抽样生产者、销售者拒绝签字的，抽样人员应当在抽样文书上注明情况，必要时可以邀请有关人员作为见证人。  抽样文书确需更正或者补充的，应当由被抽样生产者、销售者在更正或者补充处以签名、盖章等方式予以确认。  **第二十条** 因被抽样生产者、销售者转产、停业等原因致使无法抽样的，抽样人员应当如实记录，报送组织监督抽查的市场监督管理部门。  **第二十一条** 被抽样生产者、销售者以明显不合理的样品价格等方式阻碍、拒绝或者不配合抽样的，抽样人员应当如实记录，立即报告组织监督抽查的市场监督管理部门，并同时报告被抽样生产者、销售者所在地县级市场监督管理部门。  **第二十二条** 样品分为检验样品和备用样品。  除不以破坏性试验方式进行检验，并且不会对样品质量造成实质性影响的外，抽样人员应当购买检验样品。购买检验样品的价格以生产、销售产品的标价为准；没有标价的，以同类产品的市场价格为准。  备用样品由被抽样生产者、销售者先行无偿提供。  法律、行政法规、部门规章对样品获取方式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二十三条** 抽样人员应当采取有效的防拆封措施，对检验样品和备用样品分别封样，并由抽样人员和被抽样生产者、销售者签字确认。  **第二十四条** 样品应当由抽样人员携带或者寄递至检验机构进行检验。对于易碎品、危险化学品等对运输、贮存过程有特殊要求的样品，应当采取有效措施，保证样品的运输、贮存过程符合国家有关规定，不发生影响检验结论的变化。  样品需要先行存放在被抽样生产者、销售者处的，应当予以封存，并加施封存标识。被抽样生产者、销售者应当妥善保管封存的样品，不得隐匿、转移、变卖、损毁。    **第二节 网络抽样**  **第二十五条** 市场监督管理部门对电子商务经营者销售的本行政区域内的生产者生产的产品和本行政区域内的电子商务经营者销售的产品进行抽样时，可以以消费者的名义买样。  **第二十六条** 市场监督管理部门进行网络抽样的，应当记录抽样人员以及付款账户、注册账号、收货地址、联系方式等信息。抽样人员应当通过截图、拍照或者录像的方式记录被抽样销售者信息、样品网页展示信息，以及订单信息、支付记录等。  **第二十七条** 抽样人员购买的样品应当包括检验样品和备用样品。  **第二十八条** 抽样人员收到样品后，应当通过拍照或者录像的方式记录拆封过程，对寄递包装、样品包装、样品标识、样品寄递情形等进行查验，对检验样品和备用样品分别封样，并将检验样品和备用样品携带或者寄递至检验机构进行检验。  抽样人员应当根据样品情况填写抽样文书。抽样文书经抽样人员签字并加盖抽样单位公章后，与监督抽查通知书一并寄送被抽样销售者。抽样机构执行买样任务的，还应当寄送组织监督抽查的市场监督管理部门出具的授权委托书复印件。    **第四章 检 验**  **第二十九条** 检验人员收到样品后，应当通过拍照或者录像的方式检查记录样品的外观、状态、封条有无破损以及其他可能对检验结论产生影响的情形，并核对样品与抽样文书的记录是否相符。  对于抽样不规范的样品，检验人员应当拒绝接收并书面说明理由，同时向组织监督抽查的市场监督管理部门报告。  对于网络抽样的检验样品和备用样品，应当分别加贴相应标识后，按照有关要求予以存放。  **第三十条** 被抽样产品实行生产许可、强制性产品认证等管理的，检验人员应当在检验前核实样品的生产者是否符合相应要求。  检验人员发现样品的生产者涉嫌存在无证无照等无需检验即可判定违法的情形的，应当终止检验，立即报告组织监督抽查的市场监督管理部门，并同时报告涉嫌违法的样品的生产者所在地县级市场监督管理部门。  **第三十一条** 检验人员应当按照监督抽查实施细则所规定的检验项目、检验方法、判定规则等进行检验。  检验中发现因样品失效或者其他原因致使检验无法进行的，检验人员应当如实记录，并提供相关证明材料，报送组织监督抽查的市场监督管理部门。  **第三十二条** 检验机构出具检验报告，应当内容真实齐全、数据准确、结论明确，并按照有关规定签字、盖章。  检验机构和检验人员应当对其出具的检验报告负责。  **第三十三条** 检验机构应当在规定时间内将检验报告及有关材料报送组织监督抽查的市场监督管理部门。  **第三十四条** 检验结论为合格并且属于无偿提供的样品，组织监督抽查的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在提出异议处理申请期限届满后及时退还。  前款规定以外的其他样品，组织监督抽查的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在提出异议处理申请期限届满后按照有关规定处理。  **第五章 异议处理**  **第三十五条** 组织监督抽查的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及时将检验结论书面告知被抽样生产者、销售者，并同时告知其依法享有的权利。  样品属于在销售者处现场抽取的，组织监督抽查的市场监督管理部门还应当同时书面告知样品标称的生产者。  样品属于通过网络抽样方式购买的，还应当同时书面告知电子商务平台经营者和样品标称的生产者。  **第三十六条** 被抽样生产者、销售者有异议的，应当自收到检验结论书面告知之日起十五日内向组织监督抽查的市场监督管理部门提出书面异议处理申请，并提交相关材料。  **第三十七条** 被抽样生产者、销售者对抽样过程、样品真实性等有异议的，收到异议处理申请的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组织异议处理，并将处理结论书面告知申请人。  被抽样生产者、销售者对检验结论有异议，提出书面复检申请并阐明理由的，收到异议处理申请的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组织研究。对需要复检并具备检验条件的，应当组织复检。  除不以破坏性试验方式进行检验，并且不会对样品质量造成实质性影响的外，组织复检的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向被抽样生产者、销售者支付备用样品费用。  **第三十八条** 申请人应当自收到市场监督管理部门复检通知之日起七日内办理复检手续。逾期未办理的，视为放弃复检。  **第三十九条** 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自申请人办理复检手续之日起十日内确定具备相应资质的检验机构进行复检。  复检机构与初检机构不得为同一机构，但组织监督抽查的省级以上市场监督管理部门行政区域内或者组织监督抽查的市级、县级市场监督管理部门所在省辖区内仅有一个检验机构具备相应资质的除外。  **第四十条** 被抽样生产者、销售者隐匿、转移、变卖、损毁备用样品的，应当终止复检，并以初检结论为最终结论。  **第四十一条** 复检机构应当通过拍照或者录像的方式检查记录备用样品的外观、状态、封条有无破损以及其他可能对检验结论产生影响的情形，并核对备用样品与抽样文书的记录是否相符。  **第四十二条** 复检机构应当在规定时间内按照监督抽查实施细则所规定的检验方法、判定规则等对与异议相关的检验项目进行复检，并将复检结论及时报送组织复检的市场监督管理部门，由组织复检的市场监督管理部门书面告知复检申请人。复检结论为最终结论。  **第四十三条** 复检费用由申请人向复检机构先行支付。复检结论与初检结论一致的，复检费用由申请人承担；与初检结论不一致的，复检费用由组织监督抽查的市场监督管理部门承担。    **第六章 结果处理**  **第四十四条** 组织监督抽查的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汇总分析、依法公开监督抽查结果，并向地方人民政府、上一级市场监督管理部门和同级有关部门通报监督抽查情况。  组织地方监督抽查的市场监督管理部门发现不合格产品为本行政区域以外的生产者生产的，应当及时通报生产者所在地同级市场监督管理部门。  **第四十五条** 对检验结论为不合格的产品，被抽样生产者、销售者应当立即停止生产、销售同一产品。  **第四十六条** 负责结果处理的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责令不合格产品的被抽样生产者、销售者自责令之日起六十日内予以改正。  **第四十七条** 负责结果处理的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自责令之日起七十五日内按照监督抽查实施细则组织复查。  被抽样生产者、销售者经复查不合格的，负责结果处理的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逐级上报至省级市场监督管理部门，由其向社会公告。  **第四十八条** 负责结果处理的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在公告之日起六十日后九十日前对被抽样生产者、销售者组织复查，经复查仍不合格的，按照《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第十七条规定，责令停业，限期整顿；整顿期满后经复查仍不合格的，吊销营业执照。  **第四十九条** 复查所需样品由被抽样生产者、销售者无偿提供。  除为提供复查所需样品外，被抽样生产者、销售者在经负责结果处理的市场监督管理部门认定复查合格前，不得恢复生产、销售同一产品。  **第五十条** 监督抽查发现产品存在区域性、行业性质量问题，市场监督管理部门可以会同其他有关部门、行业组织召开质量分析会，指导相关产品生产者、销售者加强质量管理。    **第七章 法律责任**  **第五十一条** 被抽样生产者、销售者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市场监督管理部门按照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处理；法律、行政法规未作规定的，处三万元以下罚款；涉嫌构成犯罪，依法需要追究刑事责任的，按照有关规定移送公安机关：  （一）被抽样产品存在严重质量问题的；  （二）阻碍、拒绝或者不配合依法进行的监督抽查的；  （三）未经负责结果处理的市场监督管理部门认定复查合格而恢复生产、销售同一产品的；  （四）隐匿、转移、变卖、损毁样品的。  **第五十二条** 抽样机构、检验机构及其工作人员违反本办法第九条、第十四条第二款规定的，由县级市场监督管理部门按照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处理；法律、行政法规未作规定的，处三万元以下罚款；涉嫌构成犯罪，依法需要追究刑事责任的，按照有关规定移送公安机关。  **第五十三条** 市场监督管理部门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第八章 附 则**  **第五十四条** 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妥善保存抽样文书等有关材料、证据，保存期限不得少于两年。  **第五十五条** 本办法中所称“日”为公历日。期间届满的最后一日为法定节假日的，以法定节假日后的第一日为期间届满的日期。  **第五十六条** 本办法自2020年1月1日起施行。2010年12月29日原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令第133号公布的《产品质量监督抽查管理办法》、2014年2月14日原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61号公布的《流通领域商品质量抽查检验办法》、2016年3月17日原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85号公布的《流通领域商品质量监督管理办法》同时废止。 |